인권경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서는 대주중공업이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대주중공업의 모든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연관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2. “인권경영”은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은 대주중공업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원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는 경영활동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다
5. “인권경영헌장”은 임직원 등이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대주중공업 인권경영헌장』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 원칙)
대주중공업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 규범을 준수하며 모든 경영 활동에서 차별, 강제노동, 아동노동, 괴롭힘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권 침해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경영을 실현합니다.

제5조(차별금지)
대주중공업은 임직원의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출신지역, 장애, 종교, 임신 및 출산, 가족관계(혼인 등),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해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상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제6조(근로조건 준수)
대주중공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 휴무 및 임금관련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대주중공업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노동 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모든 임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과 실천에 적극 협조하여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대주중공업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가 및 지역의 최저 고용 연령 수준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대주중공업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대주중공업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계약업체를 비롯 모든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로 하여금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대주중공업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대주중공업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대주중공업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고객정보는 철저히 보안 조치를 통해 관리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관리체계 구축)
대주중공업은 효과적인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주요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나 경영회의,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주관하는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인권경영 추진사항을 관리 · 감독 하도록 한다.

1. 인권경영헌장 및 본 지침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권 리스크 평가 시행 및 조치사항 권고
4.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인권경영 이행)
대주중공업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 아래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1. 인권경영헌장 및 본 지침의 제 · 개정
2.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3. 인권 리스크 평가
4. 고충처리 채널 운영
5. 인권교육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제16조(교육과 내부 역량 강화)
대주중공업은 모든 임직원이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이수하도록 독려한다.

제17조(인권 침해 구제 절차)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절차를 운영하며, 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8조(고충처리 절차 운영)
대주중공업은 차별,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등을 포함한 인권 침해 이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접수 및 신고 처리절차를 운영한다.

부 칙
본 지침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